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정신과전문의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및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신보건 전문요원
2. 정신보건 시설운영자
3. 정신질환자의 가족
4.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교수
5. 정신보건업무 관계 공무원
6. 도지사가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감독과 시정
2. 평가입원에 대한 정기보고에 대한 심사

3. 이의제기된 치료행위의 심사
4.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5. 퇴원 및 계속 입원여부에 대한 심사

제4조(임기) ① 당연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
 할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타 시.도 관내로 이주한때
2.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
 을때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정신보건심판위원회) ① 법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환자의 입원과 퇴원의 심사를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안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판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고 합의제로 안건을 심사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판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판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되 정신과전문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 중에서 각각 1인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정신질환자 입원과 퇴원의 심사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⑥ 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보고) 각 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둔다.

② 각 위원회의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의약계장이 된다.

제11조(의견청취등) 각 위원회 위원장은 심사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등)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